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88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1. ~ 24. (생략) <신설>	1. ~ 24. (현행과 같음) 25. 청년정책연구원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은 예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별표에 열거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단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 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행 「청년기본법」 제12조¹⁾에서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처럼 청년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수립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개 기관²⁾과 협력 연구로서 수행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³⁾에서도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방안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를 적극 제안하였음.

1)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1개): 한국행정연구원, 협력연구기관(5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라임전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구대학교

3) 임성근 외,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52-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10월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방안 검토 결과(한국행정연구원)>

대분류	중분류	제안여부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 정책연구 수행 연구기관 공동부설 (가칭)청년 정책연구소 신설	적극 제안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 (가칭)청년정책 연구소 신설	제안하지 않음
	(3)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제안하지 않음
	(4)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적극 제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 정책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범위 확대	소극 제안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 정책 연구 수행기관을 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 으로 지정	소극 제안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 정책 연구 수행기관 대상 기관고유사업비/일반 사업비 확대지원	소극 제안

자료: 임성근 외, 위의 글, p.473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련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라는 점임.

- 먼저,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청년에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같은 다양한 연구기관⁴⁾과 그

기능적 측면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별도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기관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인 유사중복 업무의 정비 및 재조정, 기관 신설의 최소화 등 기조와 다소 배치되고, 특정 생애주기인 청년을 다루는 연구기관을 신설할 경우 아동이나 노년 등 다른 연구기관의 신설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구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관의 신설보다는 기존 기관의 전문성을 확대·개편하는 것의 장점(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청년정책연구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임.

□ 둘째,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으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을 검토하였으므로 당시의 논의 과정과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2년 7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경제·

4) 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를 두고 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본부와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하위 조직으로 두고 있음.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센터를 두었다가 금년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연구실이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등의 조직에서 청년 연구를 수행함.

인문사회연구회는 같은 해 8월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기관 설립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⁵⁾ 및 분석방법⁶⁾ 등을 논의하였음.

- 당시의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청년정책연구원은 원장과 박사급 인력 등 총 8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본부 4연구실 2센터의 조직으로 설계되었고, 청년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연구, 분야별 또는 분야 간 융합연구, 미래의제 개발 연구, 중앙·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립의 지원,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통계관리 등 기능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다만, 2022년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추진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보류되어 실제 검토위원회 구성이나 타당성 분석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음.

□ 셋째, 청년정책연구원 신설에 따른 예산 소요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청년정책연구원(정원 90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약 92억 4,000만원이고, 2030년까지 5년간 총 894억 6,400만원으로 예상됨(연평균 170억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획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6) AHP 분석으로서 정책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조직운영의 타당성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종합평점 0.5점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9,300만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청년정책 연구원의 설립운영	인건비	3,233	6,492	6,745	7,007	7,279	30,756	6,151
	경 상비· 사업비	5,683	11,413	11,858	12,318	12,796	54,068	10,814
	자산취득비	324	316	-	-	-	640	128
	합계	9,240	18,221	18,603	19,325	20,075	85,464	17,093

주: 1. 본 추계는 유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며, 실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한편, 2022년 국무조정실이 추산한 청년정책연구원(정원 80명)의 연간 지출예산 규모는 신설 첫해 기준 최소 133억 3,800만원, 최대 159억 8,600만원 수준임.

<조직설계(안)에 따른 지출예산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연봉총액	5,695	5,756	5,817	5,878	5,941
	복리후생비	238	24	243	246	248
	법정분담금	1,083	1,094	1,106	1,117	1,129
	소계	7,016	7,090	7,165	7,241	7,318
연구비 및 경상사업비		6,983	7,057	7,132	7,207	7,284
임차료 및 관리비		1,987	2,008	2,029	2,051	2,073
최소 지출		13,380	13,522	13,665	13,810	13,956
최대 지출		15,986	16,155	16,327	16,410	16,675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안), 2022, p.17

- 청년정책연구원의 신설 여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 청년정책의 안정적 연구 등 사회·정책적 수요, 기관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